

# 부천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6월 29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37회 부천시의회(제1차정례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7. 12) 상정
- 제137회 부천시의회(제1차정례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7. 7. 12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-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, 복잡함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19조 → 제26조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  
(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 단서)

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지방자치법 개정이 언제 되었는지?	○ 지방자치법이 2007. 5. 11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함.

#### 4. 토론요지

##### 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##### 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#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# 6. 소수의견

○ 없음

#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# 부천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17호
의결 년월일	2007. 7. 19 (제137회)

제출년월일 : 2007. 6. 29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법 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(법률 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골자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19조 → 제26조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 단서)

## 부천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”를 “부천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각각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번호)”를 “(공포번호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방의회규칙”을 “지방의회의 규칙”으로, “표지”를 “표시”로 한다.

제7조 단서 부분 중 “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6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의2 중 “적어도 3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부천시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 조례</u></p>	<p><u>부천시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3조(조례) ① (생략) ② <u>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</u>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<u>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</u>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,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.</p>	<p>제3조(조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----- -----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번호) ①·② (생략)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<u>지방의회규칙</u>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,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<u>표지</u>를 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공포번호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<u>지방의회의 규칙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표지</u>-----.</p>
<p>제7조(공포방법) <u>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.</u> 다만, <u>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부천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.</p>	<p>제7조(공포방법)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26조제6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8조의2(주민권익보호)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,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<u>적어도 30일</u>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의2(주민권익보호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30일</u>----- ----- -----.</p>